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15년 월 일
발의자 :

1. 주 문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명을 변경함으로써 법인명(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)과 일반명(서울시설공단)의 혼용의 문제를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오인하는 혼돈을 해소하여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혁신 공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함.

2. 제안이유

- 현 공단의 명칭이 ‘시설’과 ‘관리’에 대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고 시민들은 사명에서 공단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치구 시설관리공단과 오인하는 사례가 빈번함.
- 혁신 공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서울시설공단의 미래 비전과 미션에 부합하고 공단의 역할과 정체성에 걸맞는 사명으로 브랜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바,
- 서울시설공단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는 사명을 적용하고자 「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을 건의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사명을 서울인프라로 변경(제1조, 제2조, 제9조②
항제1호)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나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별첨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가. 조례제명을 「서울인프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한다.
- 나. 제1조 및 제2조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다. 제9조②항 제1호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라. 제1조, 제2조, 제3조①항, 제3조②항, 제4조①항, 제5조①항, 제5조②항, 제6조, 제7조①항, 제8조①항, 제8조②항, 제9조②항1호, 제9조⑤항, 제10조②항, 제11조①항, 제11조③항, 제12조①항, 제12조②항, 제13조①항, 제14조①항, 제14조②항, 제15조, 제16조, 제18조, 제19조①항, 제19조⑤항, 제19조⑦항, 제20조, 제21조①항, 제21조②항, 제23조①항, 제23조②항, 제24조①항, 제24조③항, 제25조①항, 제25조①항3호, 제25조②항, 제26조①항, 제26조②항, 제27조①항, 제27조②항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1조, 제32조①항 “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의 명칭은 이를 서울인프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은 서울인프라로 본다.

제3조(관련조례 개정) ①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1. 제9조①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16조⑥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③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13조①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④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6조④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 2. 제7조③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⑤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13조①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 2. 제13조②항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⑥ 서울특별시자동차세체납차량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관한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4조①항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⑦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18조의 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⑧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4조①항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⑨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33조①항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⑩ 서울특별시 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4조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⑪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3조④항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⑫ 서울특별시 세운초록띠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4조①항 “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5조②항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⑭ 서울특별시 온실식물원관리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3조1호 “시설관리공단이사장”을 “서울인프라이사장”으로 한다.
- ⑮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20조⑤항4호 “시설관리공단”을 “서울인프라”로 한다.
- ⑯ 서울특별시동물원 관리 규칙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 1. 제3조6호 “시설관리공단이사장”을 “서울인프라이사장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□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 조례

현 행	개 정 안
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	서울인프라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,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<u>서울인프라를</u>
제2조(법인격)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은 법인으로 한다.	제2조(법인격) <u>서울인프라는</u> (삭제).....
제3조(사무소)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.	제3조(사무소) ① <u>서울인프라의</u>
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.	② <u>서울인프라는</u>
제4조(자본금) 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50억원으로 하고,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	제4조(자본금) ① <u>서울인프라의</u>
제5조(정관)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04.22.) 1~13. (생략)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2.31.>	제5조(정관) ① <u>서울인프라의</u> 1~13. (현행과같음) ② <u>서울인프라의</u>

<p>제6조(설립등기)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</p>	<p>제6조(설립등기) <u>서울인프라</u>는.....</p>
<p>제7조(임원) 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 (개정 2007.03.08., 2010.04.22.)</p>	<p>제7조(임원) ① 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
<p>제8조(이사장) ① 공단의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,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. (개정 2007.03.08., 2010.04.22.)</p>	<p>제8조(이사장) ①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
<p>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</p>	<p>② <u>서울인프라</u>를</p>
<p>제9조(이사) ① (생략) ② 1. 시설관리공단의..... ③ (생략) ④ (생략) ⑤ 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. (개정 2010.04.22.)</p>	<p>제9조(이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1. <u>서울인프라</u>의 ③ (현행과 같음) ④ (현행과 같음) ⑤ 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
<p>제10조(감사) ② 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.</p>	<p>제10조(감사) ②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
<p>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공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위원회를 두되, 비상설위원회로 한다. (신설 2010.04.22.)</p>	<p>제11조(임원추천위원회) ①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

<p>제12조(임·직원의 겸업금지) ①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상임임원은 시장의,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 (개정 2010.04.22.)</p> <p>②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사업과 직접 관계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</p>	<p>제12조(임·직원의 겸업금지) ①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 <p>②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
<p>제13조(이사회) 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.</p>	<p>제13조(이사회) ① 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 <u>서울인프라</u>에</p>
<p>제14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.</p> <p>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.</p>	<p>제14조(임원의 대표권 제한) ①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 <p>② <u>서울인프라</u>를</p>
<p>제15조(비밀누설 금지 등) 공단의 임·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(개정 2010.04.22.)</p>	<p>제15조(비밀누설 금지 등) 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
<p>제16조(이사회 참여제한)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.</p>	<p>제16조(이사회 참여제한) <u>서울인프라</u>의</p>
<p>제18조(자체사업)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범위 내에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10.04.22.)</p>	<p>제18조(자체사업) <u>서울인프라</u>는.....</p>

제23조(결산)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(개정 2003.04.15., 2010.04.22.)

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 2010.04.22.)

제24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잉여금(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자본잉여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10.04.22.)
1~2. (생 략)

② (생 략)

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에 결손(대행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)이 생긴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. (개정 2010.04.22.)

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(개정 2010.04.22.)

1~2. (생 략)

3. 그 밖의 성질상 공단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(개정 2010.04.22.)

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공단은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3조(결산) ① 서울인프라는.....

.....
.....
.....

② 서울인프라는

제24조(손익금의 처리) ① 서울인프라는.....

.....
.....
.....
1~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서울인프라는

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) ①
..... 서울인프라가

.....
.....
.....
1~2. (현행과 같음)

3. 서울인프라에서

②
..... 서울인프라는

<p>제26조(자금의 차입) ①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다만,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. (개정 2010.04.22.)</p> <p>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으며,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6조(자금의 차입) ① <u>서울인프라</u>는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<u>서울인프라</u>는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7조(감독) ① 시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.</p> <p>② 공단은 시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(개정 2002.03.20.)</p>	<p>제27조(감독) ①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<u>서울인프라</u>는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28조(보고 및 검사 등) 시장은 공단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</p>	<p>제28조(보고 및 검사 등)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29조(공무원의 파견·겸임) 시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(개정 2010.04.22.)</p>	<p>제29조(공무원의 파견·겸임)</p> <p>.....<u>서울인프라</u>가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u>서울인프라</u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)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경력 및 근무평정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에 따른다. (개정 2010.04.22.)</p>	<p>제30조(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) <u>서울인프라</u>에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
<p>제31조(공단재산의 무상사용)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.</p>	<p>제31조(공단재산의 무상사용)</p> <p>.....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 <p>.....</p>
<p>제32조(업무상황 공표) ①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상·하반기 각각 1회씩 시장이 지정하는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에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. (개정 2010.04.22.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32조(업무상황 공표) ①</p> <p>.....</p> <p>.....<u>서울인프라</u>의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